

##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학원 개요	학원명		
	학원위치 (전화번호 : )		

설립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-	전화번호
운영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-	전화번호
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	※ 비고 1.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른 내용[차명, 차량번호, 소유자 성명(상호)]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. 2.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	

「도로교통법」 제9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항(설립자 외의 사항)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설립 · 운영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경찰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p>1.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 가.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부(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 나.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, 현황측량성과도(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 각 1부  다.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(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 라.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*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</p> <p>2.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의 경우  가.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, 현황측량성과도 1부(강의실·휴게실·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 나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(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p> <p>3.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 가.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  나. 변경사유 설명서 1부</p> <p>4. 운영자 변경의 경우  가. 변경사유 설명서 1부  나.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합니다)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1. 위치 변경의 경우: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(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2. 운영자 변경의 경우  가. 운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,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모두를 말합니다)의 주민등록표 초본  나.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(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3.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: 자동차등록원부(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처리절차**

